

# 이사회운영규정

[ 규정 제 1호  
제정 2016. 12. 28.]

개정 2017. 9. 13.

개정 2018. 9. 17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.)의 이사회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이사회는 공사 사장(이하 “사장”이라 한다.)을 포함한 상임·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당연직 및 근로자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.

②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(性)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
**제3조(이사회 운영계획)** 이사회 운영담당 부서장은 연간 이사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초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의장 및 회의소집)** ① 의장은 연2회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 현안업무보고 또는 안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한다. 의장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.

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,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
④ 의장은 노사 단체협상의 쟁점에 대하여 단체 협약체결 전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한다. 근로자대표(근로자이사 제외)는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⑤ 의장이 유고시에는 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신하여 선임된 비상임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간사)** ① 이사회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, 간사는 이사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
- 2.이사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따른 업무
- 3.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

**제6조(의결방법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.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결정에 관한 사항
2. 예산과 결산의 승인
3. 정관변경
4. 조직 ·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의한 의결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③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

④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소속직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7조(감사의 출석)**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다만,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.

**제8조(직원등의 출석)**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직원 등을 출석케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**제9조(기능)**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공사의 사업계획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- 2.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4.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- 5.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
- 6.사채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
- 7.외국차관의 도입 및 그 상환에 관한 사항
- 8.자금의 장단기 차입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
- 9.자금의 일시차입 한도액 및 차입한도 증액변경에 관한 사항
- 10.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
- 11.중요한 대행사업의 수탁 위탁 및 재 위탁 시행에 관한 사항
- 12.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
- 13.중요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
- 14.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

15.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16. 입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
17.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

18. 그 밖에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

19. 기타 법령, 조례에 따라 이사회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

제10조(의결방법의 특례) ① 이사회 의장은 업무형편상 불가피하거나 경미한 안건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, 이사회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안건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 단, 사업계획안, 예산안, 비용과 부담을 발생시키는 안, 상급기관의 지침과 관련되는 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시에는 필요할 경우 서울시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이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③ 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유선이나 전자 메일 등을 통해서 이사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,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.

#### 제11조(권한의 위임)

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9조(기능)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12조(부의 절차)

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와 이사회 주관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사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문서를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의개최 30일전

2. 본예산의 추가적 비용발생사항 및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지침과 관련한 사항은 회의개최 15일전

3. 그 밖에 사항은 회의개최 7일전

② 제1항의 이사회 상정안건이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지침에 위반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제안부서 및 해당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이사회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접수순위에 따라 의안번호를 붙여 접수부에 기록하고 그 의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호의 제출 일부터 7일 이내에 부의안건을 첨

부하여 이사회 구성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이사회소집통보서와 함께 배부해야 한다.

④ 효율적인 의안처리를 위하여 상정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은 비상임이사에게 이사회 개최전 상정의안을 설명하도록 한다.

**제13조(의안설명)** 의안은 제안자가 설명한다. 다만, 필요한 때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**제14조(의사록 작성)**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.

**제15조(의결사항 통보)**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1주 이내에 소관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의사록 등의 보존)** 이사회의 부의안(별지 제1호), 의결서(별지 제2호), 의사록(별지 제4호), 서면결의서(별지 제5호)는 이사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영구 보존 한다.

#### **제17조(비상임이사에 대한 수당지급 등)**

- ①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으며, 서면 의결의 경우에도 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근로자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## **부 칙**

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 단, 공포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(별지 제1호)부의안

부 의 안
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제 회 이 사 회       |          |
| 20 년 월 일<br>의 제 | 의안번호 제 호 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구 분             | 의 결 사 항  |

제 안 자 :

주 문 :

제안사유 :

의결사항 :

제안근거

붙임 : 1.

## (별지 제2호)의결서

## 이사회 의결서

|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|  | 제 회 이 사 회 |  |
| 201 년 월 일<br>의 제 |  | 의안번호 제 호  |  |
| 구 분              |  | 의결사항      |  |

제안자

주 문

제안사유

## 의결사항

제 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인증함.

201 년 월 일

## 의 장 (서명)

## 이 사 (서명)

# 이 사 (서명)

(별지 제3호)이사회소집통지

## 제 회 이사회 소집통지

### [수신]

000 이사, 000 감사, 000 이사, 000 이사, 00 이사,  
000 이사, 000 이사, 000 이사, 000 이사

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(이사회), 정관 제24조(이사회)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 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합니다.

- 다음 -

1. 일 시 :
2. 장 소 :
3. 의 안

| 의안<br>번호 | 의안제목 | 소관부서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|
| 제 호      |      |      |    |
| 제 호      |      |      |    |
| 제 호      |      |      |    |
| 제 호      |      |      |    |
| 제 호      |      |      |    |
| 제 호      |      |      |    |

201 년 월 일

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장 ⑩

## (별지 제4호)이사회 의사록

# 제 회 이사회 의사록

1. 일시 :
  2. 장소 :
  3. 출석이사 :
  4. 의안

5. 기록자 : 전략기획부장 (녹취사무소에서 의사록 대행)

제 회 이사회를 위와 같이 개최하고 진행하였음을 확인함.

201 년 월 일

(별지 제5호)이사회 서면결의서

## 제 회 이사회 서면 결의서

의안제목 :

(의안번호 : 제 호)

표제의 별첨 사항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동의를 얻어 집행코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이사회 의장

(인)

| 구 분 | 찬 성 | 반 대 | 서 명 |
|-----|-----|-----|-----|
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|     |     |     |

위 의결사항을 확인함

감사

(인)

(별지 제6호)위임장

## 위 임 장

본인은 다음의 소속직원이 귀사의 제 회 이사회(20 . . .)에 대리출석하여 그 권한  
을 행사하도록 위임함.

| 대 리 인 |  |
|-------|--|
| 직 위   |  |
| 성 명   |  |

년 월 일

위임자

이 사

(인)

이사회의장 귀하